



그린워싱 규제

2024.03.27

“그린워싱”이란, 기업이나 단체에서 실제로는 환경보호 효과가 없거나 심지어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제품을 생산하면서도 친환경적인 모습으로 포장하는 것으로, “위장환경주의”라고도 합니다.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환경에 피해를 덜 주는 제품의 구매수요가 증가하였고, 친환경(eco-friendly)과 같은 용어를 사용한 표시나 광고가 점점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포장과 광고만 환경보호와 연관 있는 척 소비자를 기만하는 그린워싱도 많이 나타나게 되었고, 각국은 그린워싱 피해를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고 정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표시광고의 기본법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과 이에 의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이하 “공정위 심사지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이하 “환경지원법”)과 이에 의거하여 환경부가 제정한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이하 “환경부 고시”)에서 환경과 관련된 표시광고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표시광고법과 환경지원법은 중복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내용도 상당히 유사합니다.

공정위 심사지침과 환경부 고시에 의하면, 기업은 환경 관련 표시광고 시 부정확한 표현 사용을 주의해야 하고, 표시광고 내용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주의해야 하는 환경 관련 표시광고 표현은, “친환경”, “무독성”, “무공해”와 같은 포괄적인 표현입니다.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할 경우 ‘모든 경우’에 환경오염과 무관하다고 오인될 우려가 있으므로, 포괄적·절대적 표현은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해당 제품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환경적 속성이나 효능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 및 범주를 한정하여 표시광고해야 합니다(아래 예시 참고).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한 가지 사항만 미검출된 접착제의 시험성적서를 가지고 “친환경”, “무독성” 등 포괄적·절대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모든 경우에 환경오염과 무관하거나, 독성물질을 배출하거나 포함하지 않는다고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으므로 ‘휘발성유기화합물 미검출 제품’이라고 사실 그대로 표시·광고할 필요가 있음 (공정위 심사지침 IV.가.)

최근 한국 시민단체도 녹색프리미엄을 납부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였다고 표시광고하는 8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했습니다. 이처럼 환경 관련 표시광고가 본격적으로 법적 쟁점화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사전에 표시광고 계획을 점검하고, 법령상 문제가 되지 않는 친환경 마케팅 활동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관련구성원

이혜정

변호사

02-316-1719

hjelee@shinkim.com

김주연

변호사

02-316-1602

jyunkim@shinkim.com

유나

변호사

02-316-1757

nyu@shinkim.com

최정은

변호사

02-316-1672

jechoi@shinkim.com

권이선

변호사

02-316-4697

eskwon@shinkim.com

고현정

변호사

02-316-2811

hjko@shinkim.com